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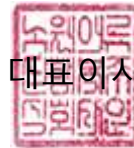
2025년 노원두물마루 COFFEE & SNACK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

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노원구청 출자기관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기업입니다. 당사는 노원구 내의 카페 및 매점 등의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며, 효율적이고 활기찬 매장의 운영을 함께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5 년 03 월 21 일

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대표이사



1. 채용 분야 및 인원

분 야	직 급	인 원	업무내용
카페/매점 관 리	매니저	0명	· 점장 보조 업무 · 커피제조 · 고객응대 · <u>매장 내·외부 청결 및 시설관리</u> · <u>매점 물건의 진열 및 관리</u> (소비기한 점검 및 재고관리 등)
	파트타임	0명	· 커피제조 · 고객응대 · <u>매장 내·외부 청결 및 시설관리</u> · <u>매점 물건의 진열 및 관리</u> (소비기한 점검 및 재고관리 등)

※ 주식회사 운영 상황에 따라 근무시작일, 근무장소, 근무시간 변동 가능

※ 주식회사 특성상 본사를 비롯한 타 사업장 근무 가능

2. 응시자격

☐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이 된 자

(단, 남성의 경우,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- ☐ 매니저 - 카페 근무 경력 6개월 이상된 자
- ☐ 신체 건강한 자로서 채용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
- ☐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
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<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취업규칙 제8조>

1.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2.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
 3.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자
 4. 신체검사결과 해당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 자
-

- ☐ 우대사항 [판단기준일 : 원서접수 마감일]
 - 1) 직무 관련 경력자
 - 2) 직무 관련 자격증(바리스타 자격증 등) 소지자
 - 4) 자차 보유자
 - 5) 주말·국경일·명절연휴(명절 당일 제외)·야간 근무에 문제가 없는 자

3. 근로조건

- ☐ 근무일정: 주 5일(월-일) 스케줄 근무(설, 추석 명절 당일만 휴무)
- ☐ 근무시간
 - 매니저 : 08:00-22:00 중 7시간 스케줄 근무
 - 파트타임 : 08:00-22:00 중 4시간 스케줄 근무
- ☐ 근무지: 노원두물마루COFFEE&SNACK (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354-4)
- ☐ 근무기간: 2025. 04. 07. ~ 2025. 11. 30. (8개월)
- ☐ 보 수: 2025년 노원구 생활임금수당 11,779원
 - ※ 각종 수당 항목에서 시간외수당, 연차 수당 등 2025년 최저시급 적용
- ☐ 근로조건
 - 근무요일, 근무시간, 근무장소는 내부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 가능
- ☐ 근로계약의 만료: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직서 등 별도의 조치를
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

4. 원서접수

- ☐ 접수기간: 2025. 03. 21. (금) ~ 2025. 03. 28. (금) / 주말·공휴일 제외
- ☐ 접수시간: 09:00~17:00
- ☐ 접수방법: 방문 및 이메일 접수
- ☐ 주 소: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05 지하1층(상계동, KB금융노원플라자)

☐ 이 메 일: nowon0419@naver.com

☐ 제출서류

* 공통서류: 지원서 1부, 개인정보제공 및 수집 동의서 1부

* 개별사항: 자격증 사본, 장애인 증명서 등

5. 심사방법

☐ 1차 심사: 서류전형

- 채용자격요건 등 채용기준에 의해 심사

※ 서류심사 후 2025. 03. 31. (월) 합격자 개별 통보

☐ 2차 심사: 2025. 04. 02. (수)

- 개별면접

- 면접 방법: 개인 역량에 대한 면접 평가

① 직무 파악 (20점) ② 인성 (20점) ③ 업무추진능력 (20점)

④ 발전가능성 (20점) ⑤ 자세 및 태도 (20점)

※ 면접 일시는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.

☐ 최종 합격자 결정: 2025. 04. 04. (금)

- 총 득점에 대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 결정

- 제출 서류: 등본, 통장 사본, 건강검진서류, 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

※ 채용예정인원 0명

6. 기타(유의)사항

☐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
☐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.

☐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☐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☐ 본 공고문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☐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,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)

☐ 제출된 채용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반환합니다.
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
-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 -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 -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 -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 -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-

□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 인사담당자(☎ 070-4159-4851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